

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56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11. 4.

발의자 : 김성찬 · 황주홍 · 이양수
윤준호 · 경대수 · 오영훈
손금주 · 박주현 · 강석진
김태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
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
노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, 축약된 한자어,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
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(안 제2조,
제12조, 제15조, 제17조, 제21조, 제22조, 제29조, 제33조).

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단서 중 “지역에 한하여”를 “지역에만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 중 “공작물”을 “인공구조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단서 및 제10호 단서 중 “경우를”을 각각 “경우는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제3호 중 “일환으로서”를 “하나로서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제3호 중 “개발사업에 착수하지”를 “개발사업을 시작하지”로, “개발사업에 착수한”을 “개발사업을 시작한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없는 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2항 단서 중 “경과한”을 “지난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말까지”를 “31일까지”로 한다.

제33조 중 “별칙의 적용에서는”을 “별칙을 적용할 때에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.
1. “무인도서”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(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. 다만, 등대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<u>지역에 한하여</u>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.	1. ----- . ----- . <u>지역에</u> 만----- . ----- .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제12조(행위제한) ① 누구든지 절 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「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」 제3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국방부장	제12조(행위제한) ① ----- . ----- . ----- . ----- . ----- . ----- . ----- . ----- . ----- .

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및 증·개축
 - ~ 6. (생 략)
 - 야생동·식물을 포획·살생·채취하거나 포획물 등을 해당 무인도서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
 8. · 9. (생 략)
 10.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. 다만,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시 거주하는 자의 경우를 제

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fiv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letter formation.

<p>외 한다.</p> <p>11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15조(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) ①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여가활동의 <u>일환으로서</u> 야생 동·식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</p> <p>4. ~ 6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17조(개발사업계획의 취소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<u>개발사업에</u></p>	<p>-----.</p> <p>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u>하나로서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(개발사업계획의 취소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<u>개발사업을</u></p>
--	--

